


#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57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24. 11. 5.  
제출자 : 달성군수 

## 1. 제안사유

### ○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

-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창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달성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,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.
- 제311회 달성군의회에 「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」을 상정, 의결하였으나,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가창면민복지회관 확장 건립 요구를 수용하여 가창면민복지회관의 시설, 연면적을 변경하고 총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함.

### ○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이전 신축

- 달성군 내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되었으나, 임대사업장 공간이 협소하여 수요 대응이 어려움.
- 이에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확장이전하여 증가하는 농기계 임대수요를 감당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[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]

- 위치 : 가창면 냉천리 2-22번지
- 기간 : 2022. 5. ~ 2027. 6.
- 규모 : 부지면적 2,321㎡, 건물 연면적 3,288㎡ (기존 1,450㎡)
- 주요시설 : 다목적체육관, 체력단련실, 스크린파크골프장, 지하주차장 등
- 총사업비 : 125억원 정도 (기존 62.5억원)
  - 건축비 110억, 설계·감리비 15억

#### ※기준가격

- 건물 신축(사업비) : 12,500,000,000원

### [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이전 신축]

- 위치 : 현풍읍 원교리 583-1번지 일원
- 기간 : 2022. 9. ~ 2025. 12.
- 규모 : 부지면적 5,390㎡, 연면적 997㎡
- 주요시설 : 지상1층(농기계 수리 및 보관창고 771㎡, 사무실 113㎡  
지상2층(직원 휴게실 113㎡)  
실습교육장 300㎡, 농기계 외부 적재장 1,000㎡
- 총사업비 : 35억원 정도
  - 건축비 32.8억, 설계·감리비 2.2억

#### ※기준가격

- 건물 신축(사업비) : 3,500,000,000원

#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

(단위: m<sup>2</sup>, 백만원)

| 구 분    |    | 당 초 |    |    | 금 회 |       |        | 계      |       |        | 비고     |  |
|---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       |    | 건수  | 면적 | 금액 | 건수  | 면적    | 금액     | 건수     | 면적    | 금액     |        |  |
| 취<br>득 | 계  | -   | -  | -  | 2   | 4,285 | 16,000 | 2      | 4,285 | 16,000 |        |  |
|        | 매입 | 토지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   | 건물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교환 | 토지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   | 건물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신축 | 건물  | -  | -  | -   | 2     | 4,285  | 16,000 | 2     | 4,285  | 16,000 |  |
|        | 기타 | 토지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   | 건물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처<br>분 | 계  | - 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       |  |
|        | 매각 | 토지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   | 건물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교환 | 토지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   | 건물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양여 | 토지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   | 건물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       | 기타 | 토지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 |
| 건물     |    | -   | -  | -  | -   | -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| -      |        |  |

# 2025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

| 종 류       | 재 산 의 표 시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취득대상<br>면 적<br>(㎡) | 기준가격(원)                 | 취득<br>시기 | 취득<br>사유               | 주관<br>부서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          | 소 재<br>지            | 면 적<br>(㎡)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|
| 1<br>(건물) | 가창면<br>냉천리<br>2-22  | 3,288<br>(연면적) | 3,288<br>(연면적)     | 12,500,000,000<br>(사업비) | 2027.6.  | 가창면민<br>복지회관<br>건립     | 미래공간과    | 신축 |
| 2<br>(건물) | 현풍읍<br>원교리<br>583-1 | 997<br>(연면적)   | 997<br>(연면적)       | 3,500,000,000<br>(사업비)  | 2025.11  | 남부농기계<br>임대사업장<br>확장이전 | 농촌지도과    | 신축 |



# 위 치 도 및 조 감 도

## 【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이전 신축】

□ 위치 :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583-1 일원

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**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**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**

제12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“1건당 기준가격” 및 “1건당 기준면적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

- 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
□ **농업기계화 촉진법**

제8조의5(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·면·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(이하 “보관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